



이사회 규정

씨제이씨지브이(주)

이사회 규정

제 정	2004.09.15
제1차개정	2005.06.10
제2차개정	2008.09.17
제3차개정	2012.05.22
제4차개정	2018.12.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CJ CGV 주식회사의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범 위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 한

- ①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달리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경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검토 및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 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다.

제5조 의 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된 임시 의장의 임기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 해당 이사회에 한한다.

제6조 이사회의 제3자 출석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7조 이사회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이사회 소집권자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이사회 소집절차

- ① 제8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는 의장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각 이사에게 이사회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및 회의의 안건을 통보한다.
- ② 위 제 1 항에서 규정된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는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생략될 수 있다.

제10조 결 의 방 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재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 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를 위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의 요건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사회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의안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자.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카.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파. 이사의 보수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공동대표의 결정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이 소요되는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라.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
- 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 라. 전환사채의 발행
-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바. 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사. 자기자본 10% 이상 금액의 차입
- 아.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자.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4. 기 타

-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가-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나. 이사의 업무 위임 및 해임
- 다. 이사의 겸업 승인
-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마.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나 계약 행위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집행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법령 및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들을 사안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 이사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5조의 개정내용은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